□ 청주 시온 숲속의아침뷰 장기민간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며 동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6.03.) 청주시 거주자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인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전 임대사업자가 전액부담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1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3층, 지상17층, 공동주택(아파트) 8동 476세대(임대4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세대별계약면적(㎡)					대지 지분 (㎡)	공급 세대수	임대 세대수	분양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세대별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67A	67.9802	21.7939	89.7741	40.4954	130.2695	39.2865	110	110	0	2023.06.30
	76A	76.9409	24.3922	101.3331	45.8333	147.1664	44.3449	66	66	0	
	76B	76.9409	24.4250	101.3659	45.8333	147.1992	44.3592	33	33	0	
	84A	84.8708	26.2875	111.1583	50.5571	161.7154	48.6445	173	173	0	
	84B	84.8792	26.3229	111.2021	50.5620	161.7641	48.6637	94	94	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동별 구분	층수	세대수	임대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차계약금 (계약시)	1회 (2021.06.30)	2회 (2021.09.25)	3회 (2021.12.25)	4회 (2022.03.25)	5회 (2022.06.25)	입주지정일 (입주시)
67A	102동 3,4라인 106동 1호라인 / 107동	1-9	57	138,000,000	89,000	13,800,000	14,640,000	14,640,000	14,640,000	14,640,000	7,790,000	57,850,000
		10-17	53	141,000,000	89,000	14,100,000	14,640,000	14,640,000	14,640,000	14,640,000	7,490,000	60,850,000
76A	104동 3,4라인 105동 2,4라인	1-9	34	157,000,000	94,000	15,70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8,900,000	65,680,000
		10-17	32	160,000,000	94,000	16,00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8,600,000	68,680,000
76B	105동 1,3라인	1-9	17	157,000,000	94,000	15,70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8,900,000	65,680,000
		10-17	16	160,000,000	94,000	16,00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8,600,000	68,680,000
84A	101동 2,3라인 102동 2라인 103동 1,3라인 104동 1,2라인 106동 2라인 108동	1-9	92	173,000,000	99,000	17,30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9,780,000	72,480,000
		10-17	81	176,000,000	99,000	17,60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9,480,000	75,480,000
84B	101동 1,4라인 102동 1라인 103동 2,4라인 106동 3라인	1-9	50	173,000,000	99,000	17,30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9,780,000	72,480,000
		10-17	44	176,000,000	99,000	17,60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18,360,000	9,480,000	75,480,000

※ 임대기간 : 당현장은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임.**

■ 유의사항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2항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합

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 분양하는 시설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건설자금)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다당 기금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형	세대당 기금 대출 금액	세대당 설정 예정 금액	비 고
67A	67,000,000원	80,400,000원	
76A	76,000,000원	91,200,000원	
76B	76,000,000원	91,200,000원	
84A	86,000,000원	103,200,000원	
84B	86,000,000원	103,200,000원	

■ 사업부지 권리명세 현황

주소	사업부지 면적(㎡)	소유자	근저당설정	근저당권자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17	15,156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최고액 45,427,2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19	6,274	주택도시보증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14-1	3	국(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203	423	국(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보증채권자이며, 신탁등기에 따른 토지 소유주입니다.
• 근저당설정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설정이며, 보존등기 후 각 세대별로 분할설정 예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근저당설정은 분양전환시 승계 또는 말소를 선택하여 처리 됩니다.
• 국유지는 준공 전 매입예정이며, 매입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등기 및 주택도시기금대출에 대한 근저당설정(설정권자 우리은행)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현장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6.03.) 청주시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에 한하여 계약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인 선정 방법

: 본 사업부지의 전소유주에게 우선 공급 후 잔여세대는 청약 접수 후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지정 계약.

■ 청약 일정 (무작위 추첨)

2021년 06월 04일부터 3일간 / 오전10시~오후4시 / 견본주택 현장에서 청약 접수

- 청약 증거금 : 현금 500만원 [입금계좌: 새마을금고 9002-1916-9298-9 ㈜시온토건] ※현장수납불가
- 대리인 청약 불가하며 청약 신청자는 신분증 필히 지참 바랍니다.
- 청약 증거금은 향후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 잔여 세대의 최대 300%까지 청약 접수 후 마감

■ 청약 마감 후 추첨 일정

2021년 06월 06일 오후4시30분 견본주택 추첨 시행

- 경찰관 배석 후 잔여 세대 추첨
- 최대 4인까지 청약자에 한하여 배석 가능하며, 배석 가능 인원수 보다 배석 신청이 많을 경우 당사에서 임의로 배석 인원 선정합니다.
- 추첨 완료 후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 사실을 안내드리며, 미당첨 시 별도의 안내는 없습니다.
- 미당첨 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추첨일로부터 7영업일 이후 일괄 환급되며, 별도의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일정

2021년 06월 09일부터 4일간 / 오전10시~오후4시

- 임대차 계약시 준비서류는 청약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1길 4 (☎:043-210-5360)

■ 입주예정일

2023년 06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주시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주택공급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변경은 시행사가 별도 지정하는 기간에만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수납 계좌**
: 우리은행 1005-804-164910 / 예금주 : 주식회사 시온토건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분양전환시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10년) 종료 후 가능하며, 시기 및 분양금액은 사업주체가 정함.

■ 임대보증금보증보험(준공전)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412021-704-0020000호	44,696,020,000원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전환 이후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잔금 등의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 및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공급접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주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사업자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접수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오픈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 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 시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청주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뿜칠 /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은 법적 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 변경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주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공군 제 17전투비행단 비행구역으로, 공군 전투기 비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보증서발급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기기, 콘센트 및 가전제품, 기타 전기 제품은 동질, 동가 수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시 현재 시공된 구조와 다르게 조명, 스프링쿨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고,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 주택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당사 시공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의 적용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주변 조성계획 등은 인・허가관청 및 청주시의 개발계획(실시)등의 변경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공급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건물의 색채, 측벽 그래픽, 마감재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설계변경, 또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는 발코니확장 및 전시용 품목이 함께 전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 시공되는 품목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공급 이후 일정기간 공개 후 회사 사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 없이 임의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이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팸플릿 등)

• 각종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단위세대의 이미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안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합니다.

■ 발코니확장 등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전 타입 및 전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기본형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확장으로 시공됨을 인지하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 불가)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생활여건(실내습도, 환기횟수 등)에 따라 방화문 및 방화문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일부 천장 마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바닥배수구에 따른 천장마감 길이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 및 소음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 될 수 있으며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음), 인접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청구관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인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통행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인접으로 인해 소음 및 생활환경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환기와 채광을 위한 환기구, 채광창 구조물 및 소방재연 관련 구조물 등이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입주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옥외 천창, D/A, 옥외계단실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접근로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하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 별로 상이합니다.

• 각 동(101동 ~ 108동)에는 피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통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 및 일부 세대에 대해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 및 청주시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계획되는 경로당, 어린이집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단지는 총 주차대수 62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22대가 지상 주차로 배치(근린생활시설 전용-3대)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배치구조상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및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반드시 주차장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확인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합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는 당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그 형태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관련 팸플릿,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경관 조명, 상가 실외기실 등의 단지 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과 인접한 동에서는 근린생활 주차공간에 대해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및 차량출입 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된 투시형 난간의 형태 및 마감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동은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상가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상가의 주차장에 인접한 아파트 주차장, 주차장 동선 등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동선 합류 등으로 인해 병목현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상가 각 호실의 층고, 천장고, 창호높이 등은 각 호실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상가 진입레벨 및 외부여건에 의해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아파트 입주자 간의 출입구를 분리하였으나, 동일 대지 내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외부 공간 및 세대에서는 시설의 냉·난방, 배기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의 대지지분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 비례로 나누어져 있으나, 대지 여건상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놀이터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층고는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 레벨은 경사 시공되어 부분적으로 동출입구에 계단 및 램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사용 시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차단기는 주출입구 등 3개소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동선, 주차대수 등은 주민편의, 주차대수 추가확보, 부대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동출입구 및 지하홀의 층고는 위치별로 상이하며 이로 인한 천장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3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대지형태 및 주동배치에 따라 각 주동별로 인접한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금액으로 본 공사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 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는 저수조, 기계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창,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피트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택배보관함 등의 위치는 준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관할 관청과 협의 하에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외부공간 및 세대에서는 시설의 냉·난방, 배기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트렌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배수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위치, 재질 및 사이즈 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준공 시 변경될 수 있고, 동일 평형이라도 타입별로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기준층 및 최상층 세대의 천장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추후,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개별난방지역이며, 향후 세대별 위치에 따라 난방효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손끼임 방지재가 세대내 문(침실1, 2, 3, 욕실1, 2)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 방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발코니에 가스배관, 주방발코니 및 안방 발코니/대피공간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내 전기식 세탁건조기 배치가 가능하도록 예상되는 곳에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배치방식, 가전 크기의 차이 및 일부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건조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되며, 욕실 바닥 레벨(단차)은 배수를 위한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포함)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임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의 비상시 탈출을 위한 방식은 3층~10층에 하향식 완강기 방식이며, 완강기는 지상1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인테리어도서, 견본주택, 홍보물간의 상이한 점이 발생할 경우 견본주택에 건립된 기준을 우선으로 하며, 향후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상이한 내용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통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임차인 모집 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지하2층에는 통신실, 108동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로 헬스장, 샤워실이 설치될 예정이고, 107동 1층에는 관리사무소, 방제실 및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며, 106동 지하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후 주민편의, 안전 등의 이유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 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상부에 계획되어있는 시행사로고는 본 공사 시 외관개선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형태,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1. 면적 및 구조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임차인은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일체의 비 주거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개별 세대나 용도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져 있으며, 당사의 면적산출 기준에 따라 소수점 4자리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버림처리로 인한 총면적대비 오차는 특정 세대 또는 특정 호수에 공차처리 되며, 계약자는 계약 전 해당 내용을 확인 바라며, 미확인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전실 및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 공용부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상품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주택의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시공 시 마감 및 단열재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 설치 시 반드시 실측하시기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설비 공간 등 각종 공용부 면적 등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과정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구조 내진설계 적용으로 구조 보강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한하여 일부 면적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명칭 및 로고 등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계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시설물 중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시설물 중 입주 개시일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 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및 주변 현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설계사의 실수로 인한 과설계, 과공급 등의 보정을 위한 변경도 포함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 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착공 후 구조설계관련 도서의 내용은 불합리한 설계나 표기의 오류, 오기, 현장여건(평판재하시험), 측량결과, 성능개선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착공도서, 공사 시방서(사용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순으로 정합니다.

■ 감리자 :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 시행사 : 주식회사 시온토건
■ 시공사 : 주식회사 시온건설개발
■ 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문의 : ☎ 070-4406-6533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는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